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경 기 도 지 사

□ 사업내용 : 2026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8 ~ '13년생)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②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 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복지시설 생활청소년·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부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6. 3. 16. (월) 9:00 ~ 3. 27.(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
(오프라인)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1 ~ '13년 출생자) 1,0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1,500,000원

□ 지원방식 : 상·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 하반기 지급기준 : '26. 9. 4.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대상자(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자격정보

② 신청자 직접 첨부

- 필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 선택(우대조건 해당 시)

-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구 분	법적 근거	시설·보호 유형 예시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52조	가정위탁, 친·인척 위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

-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①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가정 자격정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민원인 자참)

② 신청자 직접 첨부

- 필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초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 선택(우대조건 해당 시) :

-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구 분	법적 근거	시설·보호 유형 예시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52조	가정위탁, 친·인척 위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

-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본상 다자녀 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가구당 1인까지만 선정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계속장학생 신청 불가)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생활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분	구 비 서 류 명	비 고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 한부모가정 자격정보	거주시·지원자격 확인용
	신청인 제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시스템 입력으로 같음) -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 (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필수
		- (복지시설)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우대 조건 해당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 한부모 가정 자격정보	소득기준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재학생) 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민원인 지참
	신청인 제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필수
		- (복지시설)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우대 조건 해당 시) * 다자녀·다문화가정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별도 제출 불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대상자의 계좌정보,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수급자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년도의 다음 해 12. 31.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교(‘08~’13년생) 청소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대상자는 생활장학금 신청기간(2026. 3. 16 ~ 3. 27.) 중 <u>신청일 현재</u>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당 1인까지만 선정 가능합니다. ○ <u>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계속장학생 신청 불가)</u> ○ 지급계좌는 <u>대상자(지원 청소년) 본인 명의</u> 계좌가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휴면계좌, 적금 및 청약계좌 등으로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생활장학금 지급 도중 아래 사유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합니다. - 경기도 외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 대상자가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 신규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 노동청소년(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이 휴학, 퇴학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도박중독 등品行 불량으로 장학금 오용 우려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 계속장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급분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범위	○ 대상자 본인(2008~2013년생 경기도 청소년) ○ 부모 등 법정대리인 ○ 복지시설 생활청소년·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부모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 대상자 주민등록등·초본

○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구 분	법적 근거	시설·보호 유형 예시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52조	가정위탁, 친·인척 위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

○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상 다자녀 유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등본상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

○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